

特 許 戰 略

金 慶 植

<韓國技術士會 會長>

1. 머리 말

한나라의 經濟成長, 研究開發, 技術蓄積 및 特許權 등의 相互 關係는 거의 正比例 關係에 있다.

後進國은 先進國에게 이와 같은 要因面에 있어서 隸屬狀態이었으며, 그리고 後進國이 그 後進性을 脫皮하고자 하는 段階에 이르게 되면 先進國은 이에 對하여 制動을 加한다.

또한 市場性이 있다고 看做할 때, 工業所有權 即 特許權이란 獨占排他的인 權利를 미리 심어둔다.

最近 韓國은 이와 같은 處地에 처하고 있다. 우리는, 特許란 무엇이고, 이의 國際協力機構는 그리고 特許管理는 如何이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2. 特許壓力

2.1 美國의 경우

美國 ITC*는 「工業所有權 保護強化法」을 議會에 提出하고 있다 한다. 이는 美國의 特許와 知的 所有權을 侵害하는 商品에 對하여 輸入禁止를 強化하고 互惠貿易을 拒否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ITC 強化法案이라 하고 있다.

1980 年代에 들어서 美國은 每年 1,500 億弗의

貿易赤字를 내고 있다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GNP 2倍可量 된다. 經濟大國인 美國도 하는 수 없어서 위와 같은 措置를 取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는 美國의 끈질긴 壓力으로 1987 年下半期부터는 物質特許를 認定하고, 外國商標의 保護強化를 이루기 위하여 現在 特許法과 商標法을 一部 改正하는 作業을 하고 있다.

2.2 日本의 경우

우리나라는 日本의 壓力에 못이겨 1968 年 12 月에는 韓日 商標協定을, 1974 年 1 月에는 特許 및 實用新案協定을 맺어, 日本에게 特許門戶를 開放한 바 있다.

그때 (1972 年 10 月), 韓國科學院 朴達祚院長은 「韓日工業所有權 協定이 韓國產業에 미치는 影響」이란 大韓工商會議所에서의 講演에서 特許制度의 重要性을 論하면서 「…當時點에서 門戶가 開放되면 韓國은 十中八九 難處한 立場에 處하게 될 것이니, 日本이 外國의 物質特許容壓力を 巧妙하게 피하고 遲延시킨 것을 보아서도, 그 時期를 最大限으로 遲延시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强大國이 自己의 市場確保를 爲하여 產業, 經濟 및 技術面에서 制動 또는 參加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于先 상투적으로 知的 所有權開放의 壓力を 加하는 것이 通常으로 되어 있으며, 이 또한 國際協力面에 있어서는 피할수 없는 것이常例이다.

2.3 中國의 경우

中國은 先進外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 때문에,

* 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略字로서, 國際貿易委員會임. 이는 6名의 要員으로서의 委員會이기는 하나, 總員 450名인 獨立行政委員會과 한다.

1963年부터 施行하던 「發明獎勵條例」라는 發明者證** 制度를 廢止하고, 1983年 3月부터는 商標法을, 1985年 4月부터는 特許(專利)法을 制定施行하고 있다.

이를 為하여, 中國은 10年間 30餘個國의 特許法을 研究하고 기존 條例의 特徵을 加味하면서, 새로운 法을 制定한 것이다.

3. 特許制度

3.1 沿革

特許制度는 約 400年前(1561年) 英國에서 始作된 것으로 보고 있다.

美國은 1787年 商法을 制定할 때, 發明에 對한 獨占的 權利를 認定하면서 始作되었고,

프랑스는 1791年 特許權保護法을 制定하였다. 日本은 1885年 專賣特許條例로서 始作하고, 우리나라는 1908年 韓國特許令을 制定하였다. 그러나 美國 200年, 日本 100年, 우리는 아직 80年이 채 끝나지 않았다.

3.2 特許情報

年間 工業所有權 出願件數는 約 182萬件으로 그中 特許는 80萬件, 實用新案은 26萬件, 意匠 14萬件, 商標 62萬件 程度이다.

** 發明者證(Inventor's Certificates); 共產主義諸國에 存在하는 發明保護의 形態, 이 制度下에서 發明者에 發行하는 證明書를 말한다. 共產主義諸國中 一部國家는 特許制度와 더불어 發明者證 制度를 같이 採用하고 있는데 이를 나라에서의 發明者는 特許와 發明者證의 어느 하나를 選擇하여 出願할수 있게 하고 있다.

表 1 世界 工業所有權 統計(WIPO 資料)

特 訸		(1984년기준, 단위: 件)					
국 별	구 분	出 願			登 錄		
		内 國 人	外 國 人	合 計	内 國 人	外 國 人	合 計
日 本	内 國 人	256,195	26,119	282,314	51,690	10,110	61,800
美 國	外 國 人	61,841	49,443	111,284	38,364	28,837	67,201
西 獨	内 國 人	31,984	13,225	45,209	11,402	10,356	21,758
蘇 聯	外 國 人	145,910	2,410	148,320	62,744	1,114	63,858
法 國	内 國 人	11,333	8,867	20,200	7,651	16,015	23,666
英 國	外 國 人	19,093	13,735	32,828	4,442	14,425	18,867
캐나다	内 國 人	2,026	24,709	26,735	1,427	19,118	20,545
스페인	外 國 人	1,784	8,916	10,700	1,275	6,938	8,213
韓 國	内 國 人	1,997	6,636	8,633	297	2,068	2,365

意 匠		(1984년기준, 단위: 件)					
국 별	구 分	出 願			登 錄		
		内 國 人	外 國 人	合 計	内 國 人	外 國 人	合 計
日 本	内 國 人	53,272	1,411	54,683	33,523	668	34,191
韓 國	外 國 人	14,951	919	15,870	6,428	680	7,108
西 獨	内 國 人	—	6,066	—	61,720	5,960	67,680
法 國	外 國 人	4,767	1,204	5,971	13,803	2,134	15,937
美 國	内 國 人	5,862	2,877	8,739	3,428	1,510	4,938
英 國	外 國 人	3,247	3,990	7,237	3,223	3,474	6,697
오 스 트 리 아	内 國 人	3,354	2,504	5,858	3,354	2,504	5,858
스 웨 텐	外 國 人	2,662	812	3,474	1,166	601	2,267

◆ 展 望

實用新案

(1984년 기준, 단위: 件)

국별	出願			登録		
	内國人	外國人	合計	内國人	外國人	合計
日 本	200,902	1,262	202,164	57,222	578	57,800
西 獨	29,872	5,821	35,693	11,976	1,526	13,502
韓 國	13,760	1,005	14,765	1,817	543	2,360
스 페 인	4,819	1,341	6,160	4,011	1,950	5,961
프 라 질	2,136	31	2,167	409	33	442
풀 란 드	2,251	16	2,267	1,220	10	1,230
필 리 펜	474	2	476	235	2	237
우 루 파 이	168	7	175	102	5	107
조 루 투 칼	73	18	91	8	1	9

商 標

(1984년 기준, 단위: 件)

국별	出願			登録		
	内國人	外國人	合計	内國人	外國人	合計
日 本	146,734	15,148	161,882	107,153	9,483	116,636
美 國	54,053	8,547	62,600	47,886	7,613	55,499
西 獨	18,061	5,557	23,618	10,696	3,562	14,258
프 랑 스	32,465	7,175	39,640	31,370	7,218	38,588
英 國	11,761	11,035	22,796	7,773	8,310	16,083
캐 나 다	12,396	7,648	20,045	7,096	5,109	12,205
스 페 인	30,763	3,975	34,738	14,444	2,194	16,638
韓 國	15,915	8,849	24,764	7,694	3,980	11,674

表 1에 依하면, 1984年度 日本의 工業所有權 出願은 約 70萬件으로서 全世界의 38%를 占한다. 그리고 그 中 特許와 實用新案은 約 48萬件으로서 全世界의 45%를 占하고 있다.

特許만을 分析하면, 日本은 約 28萬件으로 1位이고, 2位는 소련, 3位 美國, 그리고 西獨, 英國, 캐나다의 順이다.

그러나 外國에서 自國에 出願하는 件數에 있어서는, 美國이 가장 많아 約 5萬件으로서 自國 特許出願의 44%를 차지한다. 다음이 日本, 캐나다, 英國, 西獨의 順이다.

캐나다의 外國人 出願率은 92%나 되고, 스페인은 83%이고 韓國은 76%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나라의 審查官은 外國人 特許出願을 為하여 大部分의 時間을 消費하는 셈이 된다.

参考로 WIPO 資料를 美國과 日本을 對象으로 分析하면, 美國이 外國에 特許出願한 總件數는

68,256件인데, 第1位의 出願國은 캐나다로서 13,028件이다. 이 數는 外國人이 캐나다에 出願하는 24,709件의 約 53%를 차지한다. 第2位의 出願國은 日本으로서 11,374件(日本에서의 外國人 總出願의 43.5%)이며, 第3位는 濟洲(4,520件), 4位는 英國(4,120件), 5位는 (西獨(3,095件), 6位는 스페인(2,831件) 7位는 멕시코(2,321件), 8位는 南아프리카(2,336件), 9位는 韓國(2,178件), 10位는 프랑스(2,152件)의 順이다. 꺼꾸로 外國人이 美國에 出願하는 件數는 49,443件이며, 가장 많이 出願하는 나라는 日本으로서 18,473件, 이는 全體의 37%가 된다. 2位는 西獨(9,755件), 3位는 英國(4,370件), 4位는 프랑스(3,507件)의 順이 된다.

日本에 있어서는 外國人이 日本에 出願하는 件數는 26,119件인바, 第1位는 美國으로서 (11,374件), 43.5%를 차지 한다. 2位는 西獨(5,

616 件), 3 位는 프랑스(1,754 件), 4 位는 英國(1,594 件), 5 位는 스위스(1,271 件), 6 位는 네덜란드(1,050 件)의 順이다.

한편 日本이 外國에 出願하는 總件數는 38,105 件이며 가장 많이 出願하는 나라는 美國으로서 18,473 件이며 이는 全體의 48.4%이다. 그리고 2 位는 西獨(4,231 件), 3 位는 英國(3,114 件), 4 位는 加拿다(2,655 件), 5 位는 韓國(2,454 件)이 차지하고 있다.

1984 年 外國에 가장 많이 特許出願(特許輸出)한 나라는 美國으로서 68,226 件이다. 2 位는 日本(38,105 件)이고 3 位가 西獨(36,258 件), 4 位는 英國(15,673 件), 5 位는 프랑스(14,390 件), 6 位는 스위스(10,763 件), 7 位는 이탈리아(7,617 件)의 順位이다.

3.3 우리나라 統計

1985 年末, 우리나라 總出願은 74,121 件으로서 前年度對比 15.8%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每年 이와같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그中 特許는 22.6%, 實用新案은 25.6%, 意匠 19.4%, 商標 5.2% 각각 增加를 보이고 있다.

特許만을 보면, 外國人 出願增加는 18.8%에 對하여 內國人은 35.3%增加를 보이고 있다. 다만 實用新案에 있어서는 外國人은 7.2% 減少이고 內國人은 28% 增加이다.

特許出願 10,586 件中, 外國人은 7,884 件으로서 74%를 차지하고 있다. 外國人 7,884 件中, 日本人 3,444 件, 美國人 2,426 件이니 外國人出願이 또한 74%를 이 두 나라가 占하고 있는 것이다.

1985 年度의 特許登錄에 있어서는, 總 2,268 件中 內國人 349 件(15.4%), 外國人 1,919 件(84.6%)로서 特許審查擔當者는 마치 外國人 權利設定을 爲하여 일하고 있는 工作을 일으킨다고 웃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前年度(1984 年)의 內國人率 12.6%, 外國人率 87.4%에 比하면 內國人 地位가若干이나마 向上되고 있는 셈이다.

特許 實用新案 出願者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個人出願이 約 70%나 되니 先進外國의 20%에

比하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技術과 製品이 高度化, 複合化됨에 따라서는 共同發明, 法人出願하게 되는 것이다.

3.4 先進國의 特許權 濫用

表 2 를 보면 全世界 特許權 350 萬件中 開發途上國은 겨우 6%인 20 萬件에 不過하며, 그나마 外國人이 17 萬件(84%)을 가지고 있고 內國人은 不過 3 萬件뿐이다.

外國人 所有中, 使用되고 있는 것은 5~10%뿐이고 나머지 90~95%는 不實施 特許로 되어 있다. 不實施에 대하여는 強制實施制度가 각 나라에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前例를 못보이고 있다.

表 2 開發途上國에서 特許의 所有

項 目	特許件數	分布(%)
世界分布 計	3,500	100
先進國特許	3,300	94
開途國特許	200	6
開途國에서의 分布		
內國人 所有	30	16
外國人 所有	170	84
外國人 所有中		
使用되고 있는것	10~20	5~10
使用되지 않는것	150~170	90~95

資料 : 日本特許廳(1972 年)

3.5 主要國의 特許制度

全世界 5 大洲 主要 48 個國의 特許制度의 概要를 要約하면 表 3 과 같다. 파리條約에 加入되어 있는가, PCT 및 EPC 에는, 公開制度가 있느가, 實用新案制度를 採擇하고 있는가, 權利의 存續期間은, 特許權／ 實用新案權, 權利期間의 延長은 可能한가, 等만을 表示한 것이다.

3.6 特許의 國際協力機構

(1) 工業所有權 保護를 위한 파리條約(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英國 工業所有權 同盟이라고도 한다. 이는 18

◆ 展 望

表 3 주요 48개국의 특허 제도(1985年)

국 명	파리 조약	PCT	EPC	공계 제도	실용 신안	존 기	속 간	국 명	파리 조약	PCT	EPC	공계 제도	실용 신안	존 기	속 간
아시아								풀 란 드	○			○	○	○	15/1015
중 국	○			○	○	15/5.8		포 르 투 칼	○				○	○	15/5
홍 콩	○	○				E		스 페 인	○				○	○	20/20
인 도						14		스 웨 덴	○					20	
인도네시아	○					*		스 위 스	○					20	
이 라 크	○					15		영 국	○				○	20	
이 스 라 엘	○	○				20		소 렌 드	○				○	15	
일 본	○	○		○	○	15/10		서 독	○	○	○	○	○	○	20/3.6
한 국	○	○		○	○	12/10		아프리카							
쿠 웨 이 트						15		알 제 리 아	○	○				20	
말레이지아						E		이 집 트	○	○				15	
필 리 페	○	○			○	17/5.10		모 로 코	○				○	20/10	
싱 가 폴						E		남 아프리카	○					20	
대 만						15/10		아메리카							
태 국						15		아르헨티나	○	○				5.10.15	
터 어 키	○					5.10.15		브 라 질	○	○			○	15	
유럽								캐 나 다	○	○				17	
오스트리아	○	○	○			18		콜 룸 비 아						10	
벨 기 에	○	○	○			20		멕 시 코	○				○	10/10	
체 코	○					15		미 국	○	○				17	
동 독	○	○				18		베 네 주 엘 라						5.10	
핀 란 드	○	○		○		17		오세아니아							
프 랑 스	○	○	○			20		오스트레일리아	○	○			○	16	
그리 이 스	○			○		15		뉴우지일랜드	○					16	
헝 가 리	○	○		○		20									
아 일 란 드	○	○				16									
이 탈 리 아	○	○	○		○	20/10									
네 델 란 드	○	○	○			20									
노 르 웨 이	○	○	○			20									

83年創設되었는데, 1986年1月現在97個國이加入되어 있다. 韓國은 1980年5月에, 北韓은 1980年6月에, 그리고 中國은 1985年3月에加入했다.

同盟 國民의 內外人平等의 原則, 優先權 周知 商標의 保護, 國際博覽會 出品物의 假保護, 不正競爭 防止等이 主된 內容이다.

(2) WIPO(世界知的 所有權 機構設立 協約,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世界知的 所有權 機構이라고도 하며, 1967年

7月에 設立된 國際聯合의 專門機關이다.

이는 파리條約, 1886年創設된 著作權 保護를 爲한 베른 條約(Berne Convention)의 合併事務局이라고도 볼 수 있다.

1986年1月現在, 112個國이加入되어 있다. 韓國은 1979年3月에, 北韓은 1974年8月에, 中國은 1980年6月에加入했다.

(3) PCT(特許協力 條約, Patent Cooperation Treaty)

이는 1970年에 締結되었는데, 現在39個國이加入하고 있다. 韓國은 1984年8月에 36番째

로 加入하였는데 北韓은 1980 年 6 月에 加入했으며, 中國은 아직 加入하지 않고 있다.

特許 및 實用新案의 國際出願 節次에 關한 多國間條約으로서, 그 目的是 同一發明을 複數의 나라로 出願할 경우, 그 出願 및 審查를 容易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AIPPI(國際工業所有權 保護聯盟,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것은 辯理士의 國際的 모임으로 1897 年 巴리에 本社를 두어 設立되었다. 現在 會員은 87 個國에 約 6,000(社・名)이다.

總會는 3 年마다 世界主要國 여터곳에서 開催되는데 公用語는 英・佛・獨 3 個 國語가 原則이며 準公用語로서 總會開催 國語를 쓰기도 한다.

(5) APAA(亞細亞 辯理士會, 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1969 年 12 月에 設立되었다. 東京에 本部를 두고 있으며 加盟國은 12 個國, 會員은 約 800 名이다.

(6) FICPI(國際自由開業 辯理士團體,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ete Industrielle)

이것은 1906 年 創立되었는데, 佛・獨・斯・北歐等 歐洲大陸의 諸業 辯理士의 親睦團體이다.

4. 特許制度의 役割

4.1 特許法 設定의 目的

우리나라 特許法 第 1 條(目的)는 다음과 같다.

「이 法은 發明을 奬勵・保護・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步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產業의 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4.2 產業發展에 對한 技術과 研究開發의 寄與度

(1) 技術의 寄與度

經濟成長은 技術의 進步, 規模經濟의 効果, 資我投入의 增加, 勞動投入의 增加等 要因의 結合으로 보고 있는데, 이中 技術進步의 寄與度는

그 技術이 高度일수록 그가 차지하는 分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商工部 資料로서는 韓國은 13.6%(1976 年), 日本은 22.4%(1971 年), 美國 29.7%(1969 年), 캐나다 및 유럽은 22.0%(1960 年) 程度로 比較하고 있다.

(2) 研究開發의 寄與度

研究開發費(研究開發費／總賣出額)가 生產指數(1984/1980 年)에 미치는 影響은 正比例 關係이다. 特許廳 資料에 依하면, 5 年間 生產指數(y), 平均 160.6, 19 個 製造業의 研究開發費(x)는 平均 0.80(%)인데, 이 兩係數들을 群으로 볼 때, 거의 正比例 關係에 있다.

例를 들어 石油正業에 있어서 x는 約 0.5 (%)이고 y는 約 125 인 것에 對하여, 機械製造業에 있어서는 y는 約 250 으로 되어 있다.

4.3 特許制度의 役割

(1) 特許出願과 工業生產額

特許出願 件數는 工業生產額에 比例한다.

그림 1은 最近 20 年間의 曲線이다. 그림에서 不規則 變動을 일으킨 點은, 1969 年은 日本과의 商標協定, 1974 年은 日本과의 特許協定, 1978 年은 석유파동, 1980 年은 巴黎條約 加入 等等의 影響을 받은 結果 때문이다.

1977 年부터 1984 年까지의 7 年間에 있어서, 製造業의 生產額은 2.17 倍의 增加를 보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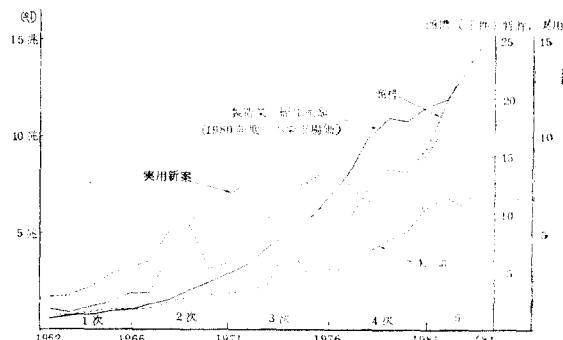


그림 1 特許, 實用新案, 商標의 出願推移와 製造工業生產額 推移比較

資料: 特許廳, 「特許年鑑」1985, 經濟計劃院「主要經濟指標」1985.

◆ 展 望

同期間中 特許 및 實用新案의 出願 또한 2.17倍의 增加를 본 것도 이 比例關係를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2) 研究開發 投資 效果

英國의 C.T. Taylor의 論文에 依하면 研究開發 投資額의 8%에 該當되는 果實은 特許制度에 依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引用하면, 1983年의 研究開發 投資 總額은 6,218億원이니, 그中 8%인 497億원은 特許制度의 果實인 셈이 된다.

(3) 技術革新 效果

特許制度에 의한 技術革新 效果額(E)은, 製造業 生產增加額(a)과 特許制度에 의한 技術革新度(b) 및 經濟成長에 對한 寄與度(c)의 相乘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E=a \cdot b \cdot c$ 가 成立되는 셈이다.

特許廳 資料로는 $a=13,012$ 億원(1983年 다만 1980年 不變價格), $b=0.2$ (特許權 實施率과 同值), $c=0.19$ (1976年 現在 13.6으로 보고, 其後 每年 0.5%의 增加로 假定한다면 1983年末에는 이것이 19%로 뒤다고 推定한 값)이니 $E=494$ 億원으로 算出된다.

따라서 (2)와 (3)을 合하면 991億원이 된다 하며, 이것은 1980年度 日本의 그것에 比하면 1/25程度 밖에 않된다 한다.

(4) 技術普及 效果

IFO 調査에 依하에, 特許制度가 없었라면 發明의 26%는 公開되지 않고 神密 노우 하우로 되었을 것이라 한다. 그려므로 發明技術의 1/4程度는 特許制度 때문에 普及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技術導入 效果

우리나라는 1962年부터 1984年까지의 期間에서 3,047件의 技術導入 契約(約 10億弗)을 했는데, 그中 特許權契約은 1,043件으로서 34.2%를 占한다. 그밖에 商標權 5.7%, 노우·하우 44%, 其他 16%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約 1/3은 特許權契約이다.

※ 本章에서 採用한 數値는 大部分 特許廳이

國際세미나에서 發表한 資料中에서 指한 것이다.

5. 特許戰略

5.1 工業所有權

(1) 特許權(Patent)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한 것, 即 發明에 對하여 賦與하는 것으로서 權利의 存續期間은 12年이다.

(2) 實用新案權(Utility Model)

產業上 利用할 수 있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加하여 物品의 實用性을 높인 考案에 對하여 賦與하는 것으로서 權利의 存續期間은 10年이다.

(3) 意匠權(Design)

物品의 形狀, 模樣이나 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한 새로운 디자인에 對하여 賦與하는 것으로서 權利의 存續期間은 8年이다.

(4) 商標權(Trade Mark)

自己의 商品을 他의 商品과 識別시키기 為하여 記號·文字 圖形 또는 이들의 結合으로서 特히 顯著한 마크(標章)에 對하여 부여한다. 權利의 存續期間은 10年마다 更新 延長할 수 있다.

5.2 發明

(1) 特許法에 依하면, 發明이라 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法 2條 1項 : 新規의 發明을 한 者는 이 法에 서 定하는 바에 依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法 5條(定義) : 發明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利用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으로서 高度한 것을 말한다.

法 6條(特許要件) 1項 : 產業上 利用할 수 있는 發明을 한 者는 다음의 것(公知)을 除外하고는 特許를 받을 수 있다.

法 6條 2項 : 特許出願前에 그 發明이 屬하는 技術의 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第1項 各號에 揭記한 發明에 依하여 容易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發明은 第1項의 規

定에 不拘하고 特許를 받을 수 없다.

(2) 法 4 條에는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가. 飲食物 또는 嗜好物의 發明

나. 醫藥 또는 그 以上의 醫藥을 混合하여 1의 醫藥을 調製하는 方法의 發明.

다. 化學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라. 原子核 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마. 化學物質의 用途에 관한 發明.

바.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素亂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害할 念慮가 있는 發明.

5.3 特許管理

特許管理란 自社의 特許權 取得과 그의 活用 그리고 他社의 特許에 對한 對策이다.

特許權의 取得은 特許管理의 基盤이고 그 特

許權의 活用은 企業에 있어서의 特許管理의 本命이라 할 수 있다.

他社 特許에 對한 對策은 企業戰爭에 있어서 他社의 特許攻擊으로부터 企業을 지키고, 他社 特許 때문에 입을 企業損失을 最少限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는 하나의 特許管理 系統圖로서, 經營計劃策定部門인 經營者와 特許管理部門 研究技術設計部門 및 營業生產部門 4者間의 聯關圖이다.

5.4 特許戦略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對抗할 수 있는 唯一한 武器는 特許戦略이다.

또한 有名企業에서 尖端技術과 新製品의 開發은 오로지 特許戦略에 基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몇 가지 例를 보면,

(1) 美 Polaroid 社

本例는 Polaroid Cameia 開發 直時, 그 技術을 特許로 獨占, 特許의 힘으로 世界市場을 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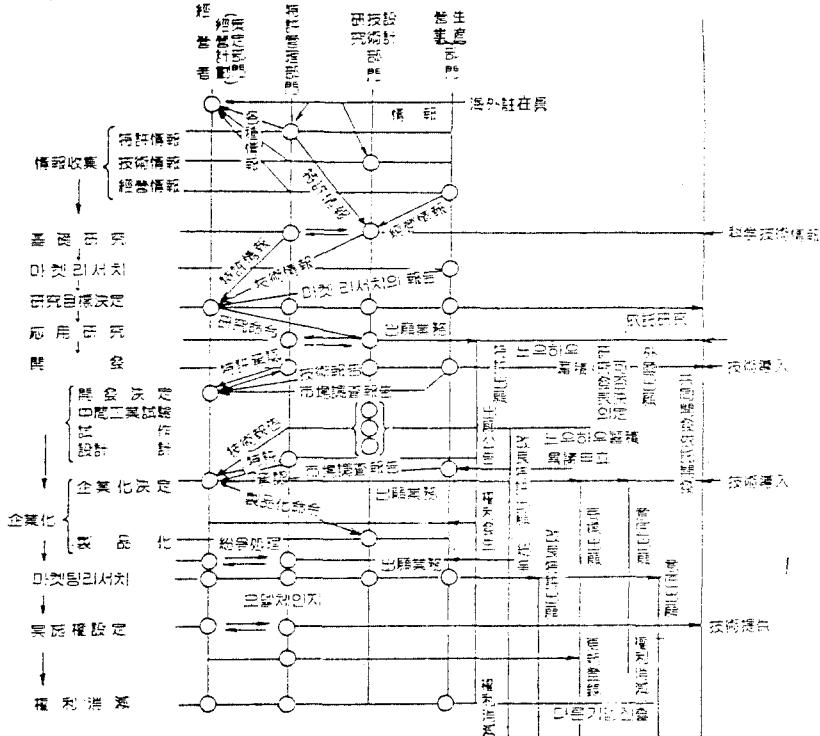


그림 2 特許管理系統圖

◆ 展 望~~~~~

占한例이다.

Polaroid 社는企業計劃段階에서特許網을世界로펼치고,研究開發戰略과特許戰略을一體로한企業戰略을세운것이다.萬若特許 없이製品販賣를하였더라면類似카메라亂立으로企業을이룰수없었을것이다.

(2) Xerox 社

社長이辯理士出身이라서, 복사기에關하여무척조밀하게特許網을짜기때문에IBM社조차그것을뚫고들어갈수없었다한다.

Xerox社는이것을獨占하기爲하여日本에도200件以上의特許出願을했다한다.

(3) 半導體 特許

半導體 素子(Germanium, Silicon)는單結晶體를使用하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는裝置構成에는機械的强度가不充分함으로, 이넓은單結晶體를維持하기爲하여支持를이必要하다한다. 그리고이支持를은Ge, Si와電氣·熱의良導體임은勿論이거니와熱膨脹係數도같아야한다.

가. B研究所가 먼저支持를로서Fe+Ni+Co合金을發明했는데特許出願하지않고公開하였다.

나. G社는研究員들이半導體支持를에Mo을使用할수있는것을發明하여研究노트에는記載하였으나研究者나그上級者가特許權獲得을意識하지못하고死藏하였다.

다.後發의W社의戰略은, Fe+Ni+Co合金代身,非公開의Mo이아니라,半導體웨어와Mo支持를을接着하는납재를發明해서이납재로서半導體表面이必要로하는PN接合을形成시키는것으로特許出願을한것이다. 그리고實質적으로廣範圍한Claim를巧妙하게가지게한것이다.

(4) PAS(Patent Strategy)-Map

그림3은日本某社의PAS-Map의例이다.

가로에는研究·開發의對象物,構成要素,機能또는소프트의要素를配置하고, 세로에는研究·開發에있어서解決하여야할課題을列舉하는것으로이매트릭스(matrix)내에特許取得戰略,取得狀況等을表示하고있는것이다.

이매트릭스로서檢討하는事項은,

- 가. 有効特許가取得될수있는課題는?
- 나. 研究·開發의重點이되는課題는?
- 다. 顧客의要求, 購賣要點에結合되는課題는?
- 라. 他社가先行하고있는課題는?
- 마. 後發他社가直面하고있는課題는?
- 바. 新材料, 新技術을開發하였을때남기는課題는?

PAS-Map에는發生한發明의評價,課題의重要性,外國出願情報等을表示하기쉽게또한全模를把握할수있게하여야한다.

年度別,出願人別,特許網構成狀況等의Map도必要하다.

日本特許廳調查에依하면,企業이他의特許權을侵害하는것이明白하게되면, 33%는實施權契約의交渉을試圖하며, 다른28%는代替技術의開發을試圖한다고하고있다.

(5) 特許事務所의役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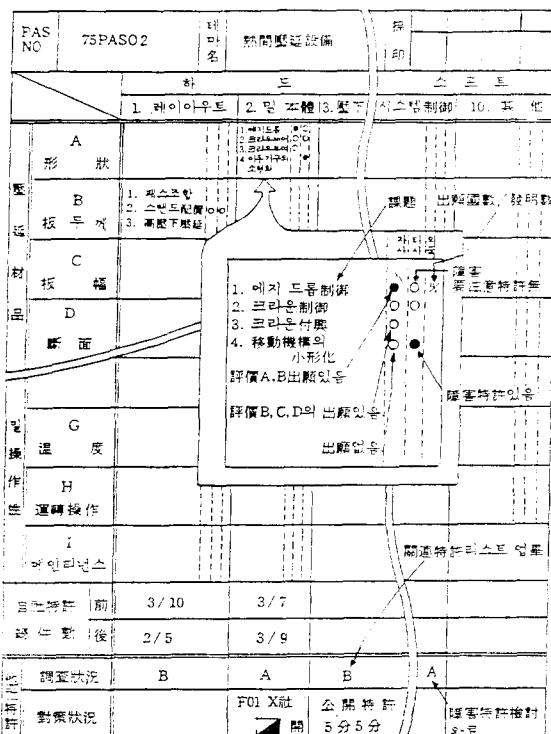


그림3 PAS-Map의例

特許戰略 ◉

日本의 著名 辯理士 原增司氏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프로, 即 辯理士에 依存하지 않고, 아마(發明家도 包含)가 自身이 直接 出願하는 것은 반드시 費用을 節約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本人이 裁判所에서 取扱한 工業所有權 侵害事件에서는 아다가 取得한 特許權이 그 努力에도 不拘하고 거의 아무 쓸모가 없다는 事例를 적지 않게 보고 있다.

日本特許廳 調査에 依하면, 出願明細書 記載不備로서 拒絶되는 것을 分析하면 誤記는 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5%는 技術的, 法律的인 不備에 起因하고 있다 한다.

企業(研究所)의 特許部는 技術(研究)部門에서 發生한 좋은 發明을 適時에 보다 많이 나오도록 誘導하고, 特許事務所로 하여금 보다 빨리 強한 權利로 出願하게 하는 即 技術部門과 特許事務所와의 架橋役割을 하여야 한다.

’86年度 優秀國產機械 褒償案內

商工部 · 韓國機械工業振興會

1. 포상대상

- 가.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류를 우수한 품질로 국산화한 업체
- 나. 기계류 국산화율의 신장세가 현저히 높은 업체
- 다. 국산개발된 기계류의 품질 및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킨 업체
- 라.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출신장세가 높은 업체

2. 포상신청

- 가. 신청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나. 구비서류(공히 각 2부)
 - (1) 신청서(한국기계공업진흥회 소정양식)
 - (2) 공적조서
 - (3) 공인검사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
 - (4) 기타 증빙서류 또는 자신의 공적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3. 포상신청기간 : 1986년 9월 30일까지
- 4. 포상심사

- 가. 우수업체 포상심사는 서류심사와 제품검사로 구분, 실시함.
- 나. 서류심사는 제품개발에 대한 포상대상 및 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함.
- 다. 제품검사는 서류심사에 합격된 기계에 대하여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성능검사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심사함.

5. 심사기준 : 우수업체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각각 적합하여야 함.

- 가. 국산화율이 70% 이상일 것.
- 나. 국제수준의 기계류와 비교하여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있을 것.
- 다. 국내 수요자로 부터의 평가가 양호하거나 수출신장세가 현저하여 국산화의 실효성이 있을 것.

6. 포상제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됨.

- 가. 주 기능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한 업체
- 나. 기존기술을 단순 활용하여 생산한 업체
- 다. 기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을 생산한 업체

7. 포상등급

- 가. 최우수상 : 대통령상 1인
- 나. 우수상 : 국무총리상 2인
- 다. 우량상 : 상공부장관상 3인
- 라. 장려상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회장상 약간명

8. 포상시기 : 우수업체 포상은 수출의 날(11월 30일)에 실시함.

9. 품질관리 : 우수업체로 포상받은 업체는 공업진흥청장의 품질관리 지도를 받아야 함.

※ 문의 : 기타 필요한 사항(소정양식 등)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진흥과(782-5811~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